

제412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2월1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54)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71)
3.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8)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69)
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32)
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8)
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5)
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68)
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3)
1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02)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08)
1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75)
1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70)
1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72)
1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81)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613)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4)
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6)
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1)
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5)
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83)
2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03)
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78)
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2)
2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5)
2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5)
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13)
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4)
2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1)
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5)
3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05)
3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97)

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1)
3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8)
3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1)
3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4)
3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6)
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9)
4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5)
4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3)
4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32)
44. 농어업회의소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7)
45. 농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3)
46. 농어업회의소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9)
47. 농어업회의소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43)
48. 농림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4)
49. 농림어업회의소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1)
50.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51.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8)
52. 한우산업기본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2)
53.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54.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4)
55.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3)
56.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7)
5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8)
5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7)
59.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6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7)(추가)

상정된 안건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54) ... 4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71) 4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8) ... 4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69) 4
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32) 4
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8) ... 4
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5) 4
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68) 4
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3) 4
1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02) 4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08) 4
1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75) 4
1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70) 4

1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72)	4
1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81) ...	4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613)	4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4)	5
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6)	5
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1)	5
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5)	5
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83)	5
2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03)	5
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78)	5
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2)	5
2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5)	5
2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5)	5
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13)	5
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4)	5
2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1)	5
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5)	5
3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05)	5
3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97) ...	5
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1) ...	5
3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8) ...	5
3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1) ...	5
3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4) ...	5
3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6) ...	5
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9) ...	5
4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5) ...	5
4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3) ...	5
4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43.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32)	6
44. 농어업회의소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7)	6
45. 농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3)	6
46. 농어업회의소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9)	6
47. 농어업회의소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43)	6
48. 농림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4)	6
49. 농림어업회의소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1)	6
50.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6
51.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8)	6
52. 한우산업기본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2)	6
53.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6
54.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4)	6
55.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3)	6
56.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7)	6

5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8)	6
5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7)	6
59.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6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여기구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7
6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7)	17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소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갑진년 첫 회의입니다.

위원회 위원님들, 송미령 장관님, 강도형 장관님을 비롯한 국회협력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올해 마음에 품은 뜻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나라 농정 및 해양수산 현안 등을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 전문위원입니다.

김병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정민규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정민규 입법조사관은 이번에 초임, 입법고시에 통과하고 초임으로 농해수위에 배치가 되었고 농업경제학을 전공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님 송미령 장관님과 오랜 기간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해 오신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농업과 해양수산 정책을 이끌어 가는 최고 책임자로서 항상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오랜 시간 농업·수산업·해양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어촌이 처해 있는 위기를 잘 살펴 보시고 당면 현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54)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71)

3.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8)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69)

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32)

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8)

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5)

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68)

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3)

1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02)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08)

1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75)

1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70)

1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72)

1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81)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613)

(11시18분)

○위원장 소병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모두 1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명칭 등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님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6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판매업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1일 단위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4)

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6)

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1)

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5)

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83)

2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03)

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3078)

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2)

2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5)

2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5)

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13)

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4)

2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1)

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5)

3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05)

3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97)

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1)

3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8)

3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1)

3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4)

3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6)

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9)

4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5)

4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3)

4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43.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32)

44. 농어업회의소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7)

45. 농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3)

46. 농어업회의소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9)

47. 농어업회의소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43)

48. 농림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4)

49. 농림어업회의소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1)

50.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51.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18)

52. 한우산업기본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2)

53.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54.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4)

55.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3)

56.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7)

5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8)

5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7)

59.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11시20분)

○위원장 소병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59항까지 모두 4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李達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병훈 예, 간사님.

○李達坤 위원 이것은 안전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주장하는 그 법안이지요?

○위원장 소병훈 예, 그렇습니다.

○李達坤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안전조정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간략하

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으로 느끼시겠지만은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은 정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과 똑같이 활동을 해 오신 분을 또 야당 뒤통수처럼 구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3분의 2를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지금 21대 국회에서 자리 수가 많은 민주당이 늘상 해 왔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사실 안전조정위원회는 국회선진화법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둥입니다. 안전을 조정하라는 것은 상대가 없는 조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원천 무효입니다. 상대 없이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그런 일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벌어졌다, 안전조정위원회라고 칭하는 그곳에서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이것은 저번 법안하고…… 저번에 정부에서 재심의를 요구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것하고 유사 동질법입니다. 원천적으로 수단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작동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정부의 정책적인 재량을 극히 제한시키는 법률에 의한 예를 들어서 상품의 가격 통제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회가 아주 금기시하고 있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구성이나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도저히 합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구성과 이 과정, 그리고 안전조정을 한다는 위원회가 반 시간 쯤 지나서 6개 법안을 조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이 1차 산업을 그리고 넓은 대지를 밟고 자랐던 자식들, 순후한 대지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도시 뒷골목에서 일어나는 아주 저열한 수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그래도 농업과 농민과 어업인을 위한다고 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변칙적이고 저열한 수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참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지도 않은 이 법을 또 다수의 힘으

로 통과시키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지금 정부가 2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여러 조사를 하면서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호남지역의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일 당정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시작된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지금 몇 달째 아닙니까. 그런데 또 유사 동일한 법으로 정부의 그런 행위를 막는다는 것은 정부의 선한 의도를 완전히 방해하고 다수의 입법 독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급하지 않은 것은 아직 신곡이 나오려면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나는 각 지역구의 사정도 보면서 여당…… 위원님들의 그 속내를 한번 감지해 보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렇게 급합니까, 이게?

○신정훈 위원 급하지요.

○李達坤 위원 신 위원님이 급하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신정훈 위원 1분 1초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李達坤 위원 1초도……

농업은 우리가 미래를 보고 해야 됩니다.

○신정훈 위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21대 국회가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李達坤 위원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의 화급한 심정을 정서적으로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객관적, 논리적으로는 이 양곡관리법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세월호 관련 법에 대해서도 이 법은 정부하고 의논을 좀 해야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의사 규정을 일탈해서서 또 올려 가지고 두드릴 모양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요.

그리고 처방 범위라든지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시행령 수준의 이야기지 법률안에 올릴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 아주 기초적인 베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긋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오늘 우리 상임위원

회가 그래도 상대가 없는 조정을 한 안전조정위원회의 결의라는 것을 가지고 의결하는 그러한 저열한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윤준병 위원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달곤 간사님 말씀 중에 ‘통과를 주장하는 안전’ 이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엄격히 구성이 돼서……

○李達坤 위원 저를 보고 물으니까 하는 건데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구성부터 잘못된 거지요.

○윤준병 위원 어쨌든 통과된 것은 명확하고, 안전조정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돼서 적법한 회의를 거쳐서……

○李達坤 위원 아니, 어떻게 조정을…… 상대 없는 조정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상대 없는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나라에?

○윤준병 위원 말씀을 좀 듣고 하세요.

○박덕흠 위원 숫자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李達坤 위원 흥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말씀을 듣고 하세요.

○박덕흠 위원 지금 보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지.

○윤준병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 시간 아닙니까.

○박덕흠 위원 우리 간사님한테 이야기를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니까 얘기하잖아.

○윤준병 위원 듣고 하세요.

○李達坤 위원 해 보세요.

○윤준병 위원 그 표현은 적절치 않은 얘기고요.

또 상대가 없는 조정이다…… 상대가 있었지요. 참여하시라고 요청해서 참여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李達坤 위원 참여했지요.

○윤준병 위원 그리고 이석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석을 하셨는데 상대가 없다니요.

○李達坤 위원 구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석을 한 것 아닙니까.

○윤준병 위원 그리고 구성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합니까?

○李達坤 위원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요.

○윤준병 위원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룰대로 구성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구성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李達坤 위원 법 위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아니, 윤미향 위원님 께서 안전조정위원회 해 놓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냥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요.

○윤준병 위원 들으세요, 좀! 듣고 얘기하세요. 듣고 얘기하시라고요.

○이양수 위원 윤미향 위원님 께 가지고 안전조정위원회 해 놓고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윤준병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듣고 좀 하세요!

○박덕흠 위원 편법으로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편법.

○위원장 소병훈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듣고……

발언 기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말을 그냥 합법적인 얘기만 하지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윤준병 위원 아니, 합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가 불법인데?

○박덕흠 위원 편법이지, 편법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폼수를 부리면……

○윤준병 위원 뭐가 불법입니까? 적법하게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된 내용인데 왜 이게 불법이냐고요.

○박덕흠 위원 폼수, 폼수라고 그러는 거지.

○이양수 위원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창피한 줄 아시라 그래.

○안병길 위원 지금까지 계속 편법 해 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위원님도 말씀 계속하시고 말씀 끝난 다음에 다시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계속 말씀하십시오.

○윤준병 위원 예.

그래서 상대가 없는 조정이라는 표현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궤변이다. 오히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참여하시도록, 하셨으면 끝까지 논의를 하셨어야지 논의를 안 하시고 이석하신 이후에 이것을 상대가 없는 조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잘못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李達坤 위원 내가 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데, 그날 내가 3개 조건을 요구했는데 조건이 하나도 안 들어졌어요.

○윤준병 위원 들어 보세요.

조건 들어야 참여하는 것이고……

○李達坤 위원 사실 위원장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대가 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윤준병 위원 왜 위원장을 이달곤 간사님이 하셔야 돼요?

○李達坤 위원 윤 위원장이 왜 위원장을 해요?

○이원택 위원 발언을 좀 들어 주세요.

○윤준병 위원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제가 하는 거지요.

○李達坤 위원 왜 참석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원택 위원 발언을 막지 마시고 좀 들어 주세요!

○윤준병 위원 언제 참석하셨어요? 참석 안 하셨잖아요, 구성할 때.

○李達坤 위원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회의를.

○이양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 그만 얘기하세요.

○李達坤 위원 너무나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윤준병 위원 뭐 논리가 안 맞아요. 당연히 논리대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건데요.

○이양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진짜 그만 하세요.

○윤준병 위원 자, 그다음에요 양곡관리법……

○이양수 위원 통과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윤준병 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좀!

○이양수 위원 숫자가 우리가 불리하니까 통과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이유를 그런 식으로 대지는 마세요. 우리가 뭐 한술밥 먹은 지 한두 달입니까?

○윤준병 위원 그래서요?

○이양수 위원 서로 알 것 알면서……

○윤준병 위원 아니, 알면서 뭘 궤변을 하시냐고요.

○이양수 위원 이달곤 간사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게 어디 있는냐고요. 나는 솔직히 입장 바꾸라는 말 그렇게까지 얘기 못 해요.

○신정훈 위원 그만하십시오. 진행발언하고 있으니까 존중하십시오.

○윤준병 위원 들어 보세요.

그다음에 이번에 개정안으로 들어 있는 양곡관리법 내용이 예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의 유사 동질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정부의…… 법률에 의해서 의무규정을 바로,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들어 있지만 이번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식품부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일정하게 심의해서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놔어요. 그 재량을 이렇게까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까지 만든 내용이 어떻게 과거에 있었던 거부권 행사하고 유사 동질법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려면 심의에 참여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된 상태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정쟁 비슷하게 참여 안 하고 반대하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20만 원 이하, 농식품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또 하락된 내용이 지금도 꺾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1월 최근까지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농민들에게 하락하지 않는다, 가격안정이 정부에서 약속한 내용이 준수된다 이런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으려면 농안법이나 이런 내용에 담겨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지금처럼 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새롭게 변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구나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안전조정위에서 의결된 6건의 농업 민생법안은 반드시 의결되어서 농민들에게 신뢰와 안정감 이런 것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達坤 위원 위원장님, 사실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예.

○李達坤 위원 우선 안전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개최 일정에 관해서 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

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여기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해서 배임 활동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농림부차관이…… 그 법안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충분히 들어서 그 법안에 반영되었다 했는데 지금 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렇게 안 되었지요.

그리고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으로 할 사항을 전부 법률 안에 규정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정부의 손을 묶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사 동질법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지금은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먼저 저도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이것은 이전의 양곡관리법과 다르다 그러면서 차관이 주재로 하는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마치 차관이 위원장이니까 정부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생산자대표단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가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보다 오히려 이 위원회에서 또 다른 논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정을 하고 싶고.

그러면 왜 국민의힘에서 안전조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느냐.

지난번에 우리 양곡관리법 처음에 처리할 때 어땠습니까? 그때 전체회의에서 바로 넘기고 안전조정위원회 열자마자 두 번 세 번 해서, 안전조정위원회는 90일의 기한을 정해서 서로 이견이 있을 때 90일 동안 충분히 숙의를 해서 그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들한테 이 법이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라고 여야가 숙의를 하라는 거지 그냥 힘으로 해서 비슷한 성향들을 넣어서, 3 대 3 동수로 해서 숙의를 해야지 4 대 2로 만들어 가지고 막 속도를 내서 밀어붙이라는 뜻은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왜 안 들어 갔느냐? 지난번에도 안전조정위원회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이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반대하면 법사위 갔다가, 30일만에 안 나눠 주면 다시 갖고 와서 또 본회의 직회부하자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할 때 어땠습니까? 들어오니까 기표소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것도, 직회부도 안전에 보면 여야가 이견이 있을 경우에 기표소를 설치하여 찬반 투표한다 이렇게 국회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국민의힘 위원이 들어오니까 기표소가 이미 현장에 들어와 있었어요,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저희가 피해, 충분히 논의할 수 없는 여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이 3 대 3 동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또 현실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안전조정위 과정이나 농해수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정치적인 입장에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과 상임위에 참석하면서 농촌 출신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달곤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그리고 홍문표 위원님 회의 때마다 농산물 가격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한 우리 야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번도 제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안전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양곡관리법에 대한 기본 취지는 농업인들의 이익을 좀 더 보호하는 제도로 바꿔 보자 그랬는데 여당 위원님께서는 소비자의 이익까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법조문을 써 놓자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정부위원회 어느 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숫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으로 다 통제하겠지요.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조차도 쌀 문제를 다룰 수 없는 문제라면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국회에도 이야기

못 하고 양곡관리심의위원회조차도 그런 기능을 안 주고.

법안에 담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대하셨잖아요. 법안에 담으려니까 반대하셔서 그러면 양곡수급위원회를 좀 더 실질화해 보자, 실질화해도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사하자 이런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런 조항을 가지고 농민들의 입을 소위 말해 틀어막으면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지금 노사정위원회 보시지 않습니까. 각종 법안을 심사할 때 간호사법, 약사법 다 논의할 때 이해당사자들하고 숙의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양곡관리는 농민들 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생존과 직결된 것이고 우리 국가 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국가의 이익도 보호해야 되지만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해야만이…… 지금 농민들의 이 피 맺힌 절규가 30년 동안 되고 있잖아요.

이달곤 위원님, 우리 임기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지역의 농민들의 소득은 지난해 무려 26%가 폭락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쌀 값이 폭 올라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회의 그런 의무를 국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그것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 줘야지요. 실질적인 양곡관리법의 실효성은 정부가…… 시행령 통치 등등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으로 보면 아무 노력을 않고 있어요.

○위원장 소병훈 신정훈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 시간인데요. 지금 그 말씀은 조금 이따가 심사결과 보고한 다음에 그때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조정위에서 통과한 이 문제는 지금 시급을 다투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빠자 하면 뺏시다. 반대하는 안 있으면 빠자고요. 그것을 원해서 저희들은 안전조정위에서 사전에 또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장 소병훈 거기에 대한 토론은 잠시 후에……

○신정훈 위원 예.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李達坤** 위원 저한테 질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위원장 소병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 지금 뭐냐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李達坤** 위원 의사진행발언과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만 해주십시오.

○**李達坤** 위원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여당으로서, 한때는 야당이었습니다마는 안전조정위원회라든지 상임위에서 안을 왜 제출 못하는지 아십니까? 다수로 밀기 때문이에요.

○**신정훈** 위원 아니요, 이야기는 하셔야지요.

○**李達坤** 위원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요 진짜로 진정으로 농민과……

○**신정훈** 위원 마지막 의결을 반대하시면 퇴장해도 좋아요. 그런데 아예 토론 자체를 거부하셨지 않습니까.

○**李達坤** 위원 토론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농촌과 농민을 위한다면 저희들 토론합니다.

○**신정훈** 위원 대안을 내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李達坤** 위원 예를 들어서 이랬잖아요, 전번 안전조정위원회라고 칭하는 데 내가 가 가지고 오늘 하루에 1건씩 토론하자…… 그래야 토론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30분 만에 6개의 법안을 가결시키면 이것은 범법적인 법안 소위가 된 겁니다.

○**신정훈** 위원 지나친 이야기입니다.

○**李達坤** 위원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정훈** 위원 예, 지나치시지요.

○**李達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말이지요 토론이 안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그 구조가 만일 안 만들어졌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했을 거예요, 쌀값에 대해서도. 구조를 그렇게 만들고 나서, 3분의 1을 딱 확보하고 나서 조정을 하자, 토론을 하자.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국회의원 일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소병훈**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의 명칭 등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안전을 심사한 윤준병 안전조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達坤** 위원 위원장님, 일어서게 돼서 죄송스

러운데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 뒤에……

아니, 심사결과를 들으시고 충분히 의견 개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서……

○**李達坤** 위원 안전조정위원회가 조정이지, 상대도 없이 어떻게 조정이 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안전조정위원회가 합법적으로 된 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소병훈** 지금 심사결과를 보고……

○**李達坤** 위원 심사결과를 보고받으면 안 되지요. 안전조정위원회 자체가 지금 구성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면 위원장은 안전조정위원회가 합법적으로 된 것에 대한 심사를, 판단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소병훈** 그러니까 안전조정위 구성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따른 구성이니까 하실 말씀은……

○**최춘식** 위원 이미 그 결과가 예측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李達坤** 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구성에 관한 문제를 적시해서 보냈었어요. 전혀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안전조정위에 가서 3개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개별법 하나씩 하나씩 조정을 하자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전조정위원회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정으로 농민과 농업인의 이익을 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박덕흠** 위원 정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지.

○**李達坤** 위원 완전히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어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이라도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조정위원장 윤준병** 안전조정위원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李達坤** 위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것은 절차를 뛰어넘는 거예요, 절차를!

○**이양수** 위원 저것 봐요, 저것 봐. 조금만 기다렸다 하세요, 조금만!

○**조정위원장 윤준병** 회의 진행하고 있어요! 나가시려면 나가세요, 빨리.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박덕흠 위원 나가는 것은 우리 마음이지 왜 나가라고 그러고……

절차가 위법인 거예요, 절차가. 그러니까 절차가 위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성곤 위원 충분히 토론합시다. 여당 위원님들, 앉으셔서 토론합시다. 토론하시지요. 농민들을 위해서 토론하시지요.

○조정위원장 윤준병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심사결과를 발표하면 그때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텐데……

○조정위원장 윤준병 우리 안전조정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지난 12월 20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5건의 대안과 1건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우리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미곡 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매입, 판매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의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도입 근거 및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은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은 한우 수급 정책에 따라 도축·출하한 한우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 시책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농산물 출하 시 농식품부장관 등이 안전성 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육성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안전……

서삼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실 거예요?

○서삼석 위원 이것은 안전 관련된 것은 아니고 의사진행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차관님 나와 계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한훈 예, 나와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먼저 수석전문위원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당 위원들께서 안전조정위원회의 구성, 진행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퇴장하시는 뒷모습이 과연 농민들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수석전문위원,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에 뭐 잘못된 게 있냐요, 법적으로?

○위원장 소병훈 그것은 물어보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은 국회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리고 적절치 않으니까, 우리 수석……

○서삼석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여쭙보겠습니다. 구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진행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잘못된 게 있었는데.

○위원장 소병훈 그것은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그러면 제가……

○윤미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병훈 윤미향……

○서삼석 위원 아니요, 안 끝났어요.

차관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물어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 본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조정위원회의 구성이나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라

고 퇴장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께서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안전조정위는 국회법에 따라서 구성한 것이고, 물론 여당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장을 하셨지만 전혀 법률적인 빈틈이 없이 만들어진 국회법에 따른 구성이다 이렇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차관한테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아니, 제가 위원장이 말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윤미향 위원님.

○윤미향 위원 같은 말씀인데요 지난번…… 사실은 여당 위원님들이 계신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가신 이후지만 회의록에 기록이라도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조위 구성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의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특히 지난 회의에서 본 위원에 대한, 안전 논의와 상관도 없는 제 개인 신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안조위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분명히 정해진 국회법에 따라서 안조위가 구성된 것이라는 것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명확하게 무소속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윤미향으로서 지금 농해수위 후반기 내내 굉장히 성실하게 때로는 민주당 정부가 했을 때 있었던 농정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농정정책에 대해서도 또 해양수산산업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다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안조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저 개인에게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 국회방송을 듣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에게도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병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조정위 구성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충분히 여야 위원님들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아무런 하자 없이 국회법에 따라서 안전조정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전조정위가 끝나고 전체회의를 1월 25일에 열기로 통보까지,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기까지 했는데 여당 위원님들 전원이 25일 날 전체회의 개최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그런 취지로, 이것은 또 안전조정위에 대한 말씀도 있으셔서 제가 여야 간에 뭔가 협의를 하거나 대화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를 오늘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사님들 간에는 말씀이 서로 오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더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회의를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조……

○주철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소병훈 의사진행발언?

○주철현 위원 아닙니다. 대체토론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대체토론?

○주철현 위원 법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것 지나왔는데, 하시겠습니까?

○주철현 위원 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말씀해 주십시오.

○주철현 위원 의사일정 33항부터 42항에 포함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농림법안소위의 병합 심사, 안전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대안에 동의는 합니다.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주요 농산물의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해서 시장가격이 이에 못 미치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윤재갑 의원님과 안호영 의원님이 발의했던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주요 수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함께 담았는데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된 대안에는 수산물은 제외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만 담겨져 있습니다. 수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한 해외 입법례나 관련 연구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이나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손실보전제도도 처음에는 해당 국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지 다른 나라가 시행한다고 따라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수천 가지 제도들이 모두 외국의 입법례를 따라 만든 것도 아니고 설령 외국 입법례가 없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게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편의상 농식품부 소관 법안으로 분류가 되어 농림법안소위에서 다루기는 했지만 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좀 더 형평을 기하려면 해수법안소위와 합동으로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산물을 포함해서 가격안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위원회 소속 3명이나 법안을 발의했는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배려 없이 입법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한 것은 수산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기후변화와 남획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에 대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우리 수산인들도 농업인 못지않게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이 주종이 되어 가고 있는 어업 현실에서 투자 규모, 비용, 기간 등 여러 면에서 보게 되면 농업보다 더 대규모 투자, 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져서…… 가격 폭락에 따른 위험 부담이 훨씬 큰 수산업, 특히 수산양식업에 대해서 아무런 배려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수산인들에게, 지역 수산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대안을 마련하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셨겠지만 수산물 가격안정제가 대안에

담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 국회 농해수위가 수산인들이 안정적인 어업활동, 수산업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법 내에서 농업과 수산업을 차별 쳐우해서 농민과 수산인을 갈라치기 한다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 법안에 주철현 위원님 걱정처럼 농민과 수산, 어민들을 갈라치기하려는 그런 뜻은 전혀 없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후에 관련된 법을 또 심사할 때 거기에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 공청회 개최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

○신정훈 위원 위원장님, 저 한 번만 법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여당 위원들이 법안에 담는 것도 반대하고 수급관리위원회에다 그런 기능을 두는 것도 반대하고, 정부가 약속한 20만 원이 무너져도 우리는 어디에다 하소연할 길이 없는데……

지금 호남 쪽의 쌀이, 자체 매입곡들이 다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고 가격은 떨어져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정부의 역할을 하실 겁니까? 약속한 것도 무너진 이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도 좋고 지금 당장 대안에 대해서도 좋고 한 말씀 듣고 저는 이야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소병훈 예, 짧게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쌀값 걱정해 주시는 것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발표한 쌀값 안정대책에 대해서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쌀 수급 보기 위해서 현장도 다녀왔고요, 거기에서 또 많은 분들의 말씀도 들

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현재 상정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50항, 제53항, 제54항 및 제59항, 이상 4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2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2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제53항, 제54항 및 제59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0항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1조 이하의 부분과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1조 이하의 부분과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1조 이하의 부분과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0항, 제53항, 제54항 및 제59항, 4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9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0항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및 제5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3항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의 법률안은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5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9항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안전조정위원회의 윤준병 조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등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어기구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4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과잉 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또한 농

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인단체 등 현장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1항부터 16항까지는 심의 의결을 오늘 안 하나요?

○위원장 소병훈 했는데……

○위성곤 위원 했습니까, 이것?

○위원장 소병훈 했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아까 소위원회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소위원회로 회부한……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현안질의 좀 제가 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장관님,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정부가 20만 원 쌀값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19만 원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거나 하향 회복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작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은 20만 2797원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초과 물량이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발표드렸던, 약속드렸던 대책안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서 관계 부처랑 협의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지난해 11월에 산물벼 18만t 전량 인수하고 농협 물량 5만t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하겠다 이 내용이 지금 시행이 안 돼서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농협 RPC나 민간 RPC에 조기에 물량 배정을 해 주면 그 부분도 좀 안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이는

데요.

그 내용 다 알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더 심각한 것은 쌀값보다도 거래된 벼값이 훨씬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유통하는 거야 쌀로 유통하지만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벼로 유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값보다 벼값이 훨씬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그냥 쌀값 기준으로—지금 쌀값도 떨어지고 있지만—대채를 마련하는 것 이것도 좀, 정부가 현장에 가서 어떤 내용으로 의견 수렴을 했는지 점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안들이 어떤 것을 검토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들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추가적인 조치로 검토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관계부처와의 협의사항도 있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갈 방향이 나름대로 예측가능하거나 나와야 사후에 잘못됐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농민들하고 대화를 사전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검토되는 대안 자체도 얘기하지 못하는 농정 이런 게 농정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현장 의견을 어떤 내용으로 검토하고 계시냐고요. 현장 의견은 뭐였어요?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위원님, 차후에 답변을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처리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대안 또 현장에서 들었던 농민들의 의견이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것 처리하고 하시지요. 뒤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처리하기 전에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소병훈 아니, 지금 다 처리했는데.

지금 변경……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우리 오늘 안건 처리는 다 했습니다.

여기구 간사님.

○여기구 위원 여기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안건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오늘 전체회의 중에 이 안건을 추가하여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서를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여기구 위원 외 1인 서면 동의)

(12시07분)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방금 여기구 간사께서 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동의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 요청에 따른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사일정 제60항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6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837)

(12시08분)

○위원장 소병훈 의사일정 제60항을 상정합니다.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구 위원님.

○여기구 위원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의 범위에 현행 희생자의 가족 등 외에 부상을 입은 잠수사도 추가하려는 것인데 부상 잠수사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현행 법령에 2024년 4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제한 없이 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은 2029년 4월 15일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한편 2024년 4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금 역시 그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관련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의 법률안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 없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피해자분들께 지난 10년 동안 약 90억 원을 지원하여 약 4000명이 수해를 입은 바 있고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의료비 지원제도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안은 공권력이,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것을 한시적으로 보호하자는 게 아니고, 한시적인 보호 중에 그 피해가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장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합의에 이를 정도의 그런 협의가 안 됐다는 것에서 유감 표시를 하셨지만 최근의 이태원 특별법을 포함해서 일단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국민을 보호하느냐 그리고 사고 이후에 그 피해를 당한 국민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그 부분을 정부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국회협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김 승 남	박 덕 흠	서 삼 석	소 병 훈
신 정 훈	안 병 길	안 호 영	여 기 구
위 성 곤	윤 미 향	윤 재 갑	윤 준 병
이 달 곤	이 양 수	이 원 택	정 희 용
주 철 현	최 춘 식	홍 문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신 우
전 문 위 원	상 지 원
전 문 위 원	공 춘 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	송 미 령
차 관	한 훈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강 도 형

【보고사항】

○의안 회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8. 최춘식·김성원·구자근·박대수·이용호·배준영·박성중·김희곤·하영제·지성호 의원 발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8. 윤미향·정태호·송옥주·양정숙·정성호·김승남·강성희·위성곤·주철현·소병훈·윤재갑·용혜인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8. 윤미향·정태호·송옥주·양정숙·한정애·정성호·김승남·강성희·위성곤·주철현·소병훈·용혜인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9일 회부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윤미향·송옥주·윤재갑·신정훈·허영·양정숙·김의겸·전용기·김남국·김두관·김승남 의원 발의)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이양수·박덕흠·김영식·이인선·지성호·김석기·장동혁·배준영·김예지·이용 의원 발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이양수·金炳旭·박덕흠·노용호·이인선·김희곤·김영식·지성호·김석기·장동혁·배준영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최춘식·김성원·구자근·박대수·이용호·배준영·박성중·김희곤·하영제·지성호 의원 발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윤미향·여기구·송옥주·김승남·정성호·윤재갑·용혜인·김의겸·강성희·신현영 의원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윤미향·송옥주·윤재갑·허영·양정숙·김의겸·전용기·김남국·김두관·김승남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윤미향·김성주·전용기·강성희·박홍근·황운하·윤재갑·김의겸·신현영·위성곤 의원 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윤미향·송옥주·신정훈·윤재갑·허영·양정숙·김의겸·전용기·김승남·강성희 의원 발의)

이상 8건 2024년 1월 2일 회부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4. 1. 10. 박찬대·조승래·이정문·이인영·장경태·유기홍·허종식·박성준·문진석·전재수 의원 발의)

1월 11일 회부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2024. 1. 11. 윤주경·유경준·권명호·송석준·강대식·장동혁·서병수·백종현·김희곤·이용호·윤창현·박대수·이인선·김용판·전주혜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4. 1. 11. 서삼석·윤재갑·김승남·진성준·소병훈·김정호·신정훈·양정숙·이용선·오영환·이개호·위성곤·한병도 의원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4. 1. 11. 서삼석·안호영·홍성국·김승남·한병도·허숙정·소병훈·양정숙·오영환·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12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이현승 의원·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4. 1. 12. 박홍근·이현승·심상정·김상희·김민석·우원식·윤미향·진성준·한정애·

조오섭 · 박성민 · 이주환 · 최춘식 · 박덕흠 ·
하영제 · 정경희 · 서영석 · 이동주 의원 발의)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4. 1. 12. 이달곤 · 강기윤 · 박덕흠 · 최형두 ·
홍문표 · 김영선 · 최춘식 · 박성민 · 권성동 ·
윤한홍 · 백종현 · 정희용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4. 1. 12. 이달곤 · 강기윤 · 박덕흠 · 최형두 ·
홍문표 · 김영선 · 최춘식 · 박성민 · 권성동 ·
윤한홍 · 백종현 · 정희용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15일 회부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4. 1. 19. 엄태영 · 이명수 · 성일종 · 하태경 ·
한무경 · 지성호 · 노용호 · 황보승희 · 이용 ·
권성동 의원 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4. 1. 19. 홍문표 · 박덕흠 · 윤재갑 · 이종배 ·
권성동 · 서병수 · 이현승 · 김태호 · 지성호 ·
엄태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2일 회부됨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4. 1. 23. 김도읍 · 유경준 · 조수진 · 권성동 ·
권영세 · 전주혜 · 김형동 · 황보승희 · 윤한홍 ·
장동혁 · 권명호 의원 발의)

1월 2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4. 1. 11. 최형두 · 위성곤 · 김희곤 · 최인호 ·
여기구 · 이성만 · 김성원 · 강기윤 · 김예지 ·
황보승희 의원 발의)

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
양향자 의원 ·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4. 1. 12. 서삼석 · 양향자 · 최형두 · 윤한홍 ·
김예지 · 김성원 · 강기윤 · 김태호 · 한무경 ·
정동만 · 이달곤 의원 발의)

1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4. 1. 17. 송갑석 · 조오섭 · 민형배 · 이병훈 ·
이용빈 · 윤영덕 · 이성만 · 오영환 · 이개호 ·
강훈식 · 윤후덕 의원 발의)

1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4. 1. 25. 전봉민 · 서병수 · 이주환 · 이현승 ·
안병길 · 김희곤 · 박수영 · 장제원 · 정동만 ·
김도읍 · 조경태 · 김미애 · 백종현 · 윤재옥 ·
하태경 · 박재호 · 전재수 · 황보승희 · 최인호 의원
발의)

1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24. 1. 29. 이채익 · 이상현 · 박성민 · 김석기 ·
권명호 · 서병수 · 金炳旭 · 김기현 · 김정재 ·
우신구 · 정경희 의원 발의)

1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농림축산 식품부	1	-	4	3	2	13
해양수산부	6	-	3	9	5	9
농촌진흥청	-	-	-	9	1	1
산림청	1	-	2	16	1	15
해양경찰청	-	-	-	9	-	1